



제 418회 국회 (정기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필수농자재 구입비용 지원 등〉

■ 전종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924)

2024. 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 용 훈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1
III . 주요내용	2
IV . 검토의견	3
1. 제정안의 취지와 필요성	3
가. 제정안의 취지	3
나. 제정안 관련 국회 심사 경과	3
다. 관계 부처 의견	6
라. 법률 제정 필요성	7
2. 조문별 검토	15
가. 목적 및 정의	15
나. 지원대상, 지원품목 및 지원기준	16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19

라.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20
마. 필수농자재 가격 조사 및 위반행위 조사	23
바. 권한의 위임·위탁 및 벌칙	26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전종덕의원 등 13인
2. 제 안 일 : 2024. 8. 19.
3. 회 부 일 : 2024. 8. 20.

II. 제안이유

기후변화 및 불안한 국제정세에 따른 농자재 및 에너지 가격의 급등으로 농업인들의 농가 경영비용에 대한 부담이 심화하고 있음.

2023년 농업부채는 4,158만 원으로 2022년 3,502만 원에서 18.7%가 증가하여 역대 최고액을 기록하였고, 농업경영비도 2022년 2,512만 원에서 2023년 2,678만 원으로 6.6%가 증가하였음.

이는 농업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농약, 비료, 사료 등 농자재와 전기·유류(이하 “필수농자재”라 함)에 지출하는 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자재 일부에 대한 지원 조례 제정으로 제한적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정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음. 따라서 농가의 생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 지원정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농업인을 위한 필수농자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의 활발한 생산활동에 기여하고, 농가경영의 안정을 보장하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Ⅲ.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농자재 및 에너지 가격의 폭등으로 인하여 농업경영 위기에 직면한 농업인을 위한 필수농자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가소득의 증대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필수농자재의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시행계획 및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 다. 농자재 및 에너지 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경우 필수농자재의 구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지원 대상 및 방법 등을 정함(안 제6조).
- 라. 매년 필수농자재의 지원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함(안 제8조).
- 마. 필수농자재의 가격 등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함(안 제9조).
- 바. 필수농자재의 지원에 관한 위반행위 발생 현황을 조사하고 그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10조).

IV. 검토의견

1. 제정안의 취지와 필요성

가. 제정안의 취지

제정안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고유가,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으로 인한 원자재 및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농업 전반의 경영비 부담 증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 증가, 이에 따른 농업소득의 감소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가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제정안은 농가가 지출하는 필수농자재 구입비용의 일부 등을 정부가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농가의 경영과 농업 생산의 안정, 농가의 소득 보장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제안됨.

나. 제정안 관련 국회 심사 경과

제정안과 관련하여 동 제정안 제안 전에 발의된 5건의 ‘필수농자재 등 지원’ 관련 제정안이 2024년 8월 26일 우리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되었음.

연 번	안건명(대표발의)	제안일	전체회의 상정 및 소위 회부일
1	농업경영체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필수농자재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문대림의원)	24.06.17	24-08-26
2	필수농자재 국가 지원에 관한 법률안(윤준병의원)	'24.06.25	
3	필수농자재 및 농업기계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한규의원)	'24.07.02	
4	필수농자재 국가지원법(여기구의원)	'24.07.10	
5	필수농자재 지원법안(이개호의원)	'24.07.18	

각 제정안은 제명은 모두 다르나 필수농자재 등의 지원을 위하여 목적, 정의, 국가 등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을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제정안에 따른 지원 품목, 대상 및 기준도 각각 정하고 있음.

[제정안의 구성체계 비교]

문대림의원안	윤준병의원안	김한규의원안	여기구의원안	이개호의원안	전종덕의원안
농업경영체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필수농자재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	필수농자재 국가 지원에 관한 법률안	필수농자재 및 농업기계 지원에 관한 법률안	필수농자재 국가 지원법안	필수농자재 지원법안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의 책무) 제4조(농업인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 체의 책무)
제4조(다른 법 률과의 관 계)	제4조(다른 법 률과의 관 계)	제4조(다른 법 률과의 관 계)	제4조(다른 법 률과의 관 계)	제5조(다른 법 률과의 관 계)	제4조(다른 법 률과의 관 계)
					제5조(종합 계 획 및 시행 계획의 수립 · 시행)
제2장 추진체계 등	제2장 필수농자재 국가 지원 등				
제5조(농업경 영체 경영위 기 대응 심 의위원회)		제6조(필수농 자재심의위 원회)	제8조(필수농 자재심의위 원회)	제7조(필수농 자재심의위 설치) 제8조(위원회 의 심의사 향) 제9조(위원회 의 구성 및 운영)	
제6조(농업경 영비 실태조 사 및 정보시 스템의 구축 · 운영)	제7조(필수농 자재 실태조 사 및 정보시 스템의 구축 · 운영 등)		제9조(실태조 사)	제10조(실태조 사)	제9조(필수농 자재 가격 등의 조사) 제10조(위반행 위의 조사)

문대림의원안	윤준병의원안	김한규의원안	어기구의원안	이개호의원안	전종덕의원안
제3장 필수농자재 및 농업에너지비 용의 지원 등					
제 7 조 (필수 농 자재 및 농 업에너지비 용 지원)	제5조(지원대상 등) 제6조(지원기준)	제 5 조 (필수 농 자재 및 농 업기계 지원)	제5조(지원 대 상 및 기준)	제 6 조 (필수 농 자재 구입비 지원)	제 6 조 (필수 농 자재의 지 원)
제8조(저탄소 농 자재 우대 지원)					제 7 조 (필수 농 자재 지원금 의 사용)
제9조(자금 지원 등)					제 8 조 (필수 농 자재 지원을 위한 예산)
제10조(고용보 조금 등의 지급)					
제11조(조세의 감면)					
	제 8 조 (지 급 신 청)	제 7 조 (지 급 신 청)	제 6 조 (지 급 신 청)		
	제 9 조 (이 의 신 청) 제10조(필수농 자재지원 이 의 신청 심 의 위원회)	제 8 조 (이 의 신 청)	제 7 조 (이 의 신 청)		
	제11조(환수)	제9조(환수)	제10조(환수)	제11조(점검 및 환수)	
	제12조(중복지 원 제한)	제10조(중복지 원 제한)	제11조(중복지 원 제한)	제12조(중복지 원 제한)	
제12조(권한의 위임·위탁)	제13조(권한의 위임·위탁)	제11조(권한의 위임)	제12조(권한의 위임·위탁)	제13조(권한의 위임)	제11조(권한의 위임 및 업 무의 위탁)
제4장 벌칙	제3장 벌칙				
제13조(벌칙)	제14조(벌칙)	제12조(벌칙)			제12조(벌칙)
부칙	부칙	부칙	부칙	부칙	

동 제정안(전종덕의원안)은 총 12개 조문으로 이루어진 본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필수농자재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안 제5조), 위반행위의 조사(안 제10조)에 관한 조항 등

을 별도로 마련한 것을 제외하면 이전에 발의된 제정안과 내용상 큰 차이는 없어 보임.

[제정안의 구성체계]

구 분	제정안
본문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필수농자재의 지원) 제7조(필수농자재 지원금의 사용), 제8조(필수농자재 지원을 위한 예산) 제9조(필수농자재 가격 등의 조사), 제10조(위반행위의 조사) 제11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12조(벌칙)
부 칙	시행일

다. 관계 부처 의견

1) 농림축산식품부

비료·농약·사료·에너지 등 투입재 보조금은 생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WTO 협정상 감축 대상 보조금으로 가격의 인상 차액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제정하는 것에 신중한 필요가 있음.

또한, 공급망 위기 시 원자재의 원활한 유통 보장 및 관련 정책의 조화로운 연계를 위한 경제안보품목 선정, 계획수립, 조기경보체계 운영, 경제안보품목 생산·기술개발·비축관리 지원 등을 규정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에 따른 정부 조치의 기본 방향과도 맞지 않음.

아울러 최근 국제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비료·사료·유류비 등을 지원¹⁾하고 있으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24.3.26)²⁾으로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제정안 마련에 입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2) 기획재정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4.3.26 개정)」으로 농가 경영비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 근거가 이미 마련되어 별도 입법은 불필요함.

그간 유가 상황 및 비료·종자 등 경영비 부담 등을 종합 고려하여 필요시 농자재 비용 등을 이미 지원하고 있으며, 동 법률안대로 제정 시 필수농자재 지원이 상시적·항구적 지원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고, 특정 지원 기준에 해당 시 의무 지원으로 귀결될 수 있어 경직된 재정 운용과 과도한 재정 부담이 우려됨.

또한, 정부가 농가의 소득과 경영안정을 위해 농업 직불금 예산을 확

1) <농업 경영비 부담완화 지원 정책>

- (비료) 무기질비료 가격인상 차액 보조('22년 1,801억원, '23년 1,000, '24년 288)
- (사료) 저리 사료구매자금 융자 지원('22년 1.5조원 '23년 1조원 '24년 1조원, 연이율 1.8%)
- (유류비) 시설농가 유가보조금 한시지원('22년 151억원, '24년 70), 농업용 면세유 제도 개선* 및 일몰기한 연장('22~'23년 → '24~'26년)
 - * 과수 냉해피해 예방을 위한 노지용 난방기를 면세유 대상에 추가 등
- (전기료 인상 완화) '23년도에 산업용 등 요금은 21.1원/kWh 인상하였으나, 농사용은 3년간 분할 적용 중('23년 8.2원, '24년 6.5, '25년 6.4)
- (효율 제고) 시설농가에 신재생에너지 설비(174억원, 51호) 및 에너지절감 시설(80억원, 1.2천호) 지원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 원자재 공급망의 위험, 국제 에너지 가격의 급격한 상승 등에 따라 경영상 부담이 급증한 농어업경영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24.3.26. 개정, 신정훈 의원 발의).

대하고 있는 점, 사료구매자금 등 다양한 지원 등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라. 법률 제정 필요성 검토

제정안은 원자재 및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농업 전반의 경영비 부담 증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 증가, 이에 따른 농업소득의 감소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가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실제 원자재 및 에너지 가격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2022년에 급등하였고 2023년 하락세를 보이긴 하였으나, 여전히 2019년 및 2020년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국제 원자재 및 에너지 가격 추이]

구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국제유가(두바이)(\$/배럴)		63.5	52.3	69.4	96.4	82.1
유연탄(전력용연료탄)(\$/톤)		78.1	61.0	141.8	360.1	172.8
천연가스 수입가격(\$/톤)		505.4	390.1	550.8	1053.5	781.9
비료 원료	요소(\$/톤)	313	289	445	813	265
	인산이암모늄(\$/톤)	380	326	552	910	455
	염화칼륨(\$/톤)	350	296	317	776	297
	암모니아(\$/톤)	289	272	546	948	330
사료 용곡물	밀(\$/톤)	181.8	201.9	258.2	330.3	237.2
	대두박(\$/톤)	337.3	353.8	422.2	487.8	485.0
	옥수수(\$/톤)	151.7	143.3	225.3	272.8	222.5

※ 자료: 농식품부 농업정책관 농업경영정책과 제출자료('24.8.14)

이에 따라 면세류, 비료, 사료의 단가도 2019년 및 2020년보다 급등하였고, 농사용 전기 판매단가도 상승³⁾하고 있음.

[농자재 등 비용 증가 추이]

구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비고
면세유 (원/ℓ)	경유	829	688	829	1,396	1,205	한국석유공사 공시가격
	등유	802	675	783	1,296	1,196	
	휘발유	771	650	796	1,248	1,073	
무기질비료 가격(농협)(원/톤)		505,900	545,900	567,734	1,186,932	901,550	농협 판매가격
배합사료 가격(농협)(원/kg)		472.7	479.3	525.3	645.2	669.9	
농사용 전기 판매단가(원/kwh)		47.7	48.4	45.9	56.9	75.1	각 년도별 전력 판매액/사용량

※ 자료: 농식품부 농업정책관 농업경영정책과 제출자료('24.8.14)

또한,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나타내는 ‘농가구입가격지수⁴⁾’는 2023년 120.4로 2020년(100) 대비 20.4% 상승하였는데, 특히 사료·비료·농약·기계 등 구매와 관련한 ‘재료비가격지수’는 41.4%로 급등하였음.

[농가구입가격지수 추이]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총지수	94.3	93.6	95.1	96.6	98.1	100.0	105.0	120.1	120.4
가계용품	94.3	95.5	97.4	98.6	98.9	100.0	102.5	107.4	111.2
재료비	98.2	93.0	91.6	91.1	93.9	100.0	108.4	145.8	141.4
노무비	80.5	83.8	87.6	92.4	96.3	100.0	108.9	122.9	132.1
경비	96.8	90.9	94.9	99.4	103.2	100.0	107.3	133.1	127.3
자산구입비	88.3	94.3	96.6	98.6	99.3	100.0	103.4	99.1	98.2

※ 자료: 통계청

3) '23년도에 산업용 등 요금은 21.1원/kWh 인상하였으나, 농사용은 3년간 분할 적용 중('23년 8.2 원, '24년 6.5, '25년 6.4)임.

4) 농업경영체의 가계 및 경영활동에 투입된 407개 품목의 2020년 기준(2020=100)의 가격지수

한편, 통계청이 지난 5월 발표한 「2023년 농가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농가소득(농업소득+농업외소득+이전소득+비경상소득)은 전년 대비 10.1% 늘어난 5,082만 8,000원으로 집계되었음.

농업소득의 경우 전년보다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농업경영비의 꾸준한 증가로 연 1,000만원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농가소득 추이]

(단위: 천원, %)

항목	'19	'20	'21	'22	'23	증감	증감률
농가소득	41,182	45,029	47,759	46,153	50,828	4,675	10.1%
○ 농업소득	10,261	11,820	12,961	9,485	11,143	1,658	17.5%
- 농업총수입	34,436	36,033	37,190	34,604	37,922	3,318	9.6%
* 농작물수입	23,299	24,534	25,997	24,986	27,557	2,571	10.3%
* 축산물수입	10,478	10,434	10,806	9,153	9,577	424	4.6%
* 농업잡수입	659	1,064	387	465	789	324	69.8%
- 농업경영비	24,175	24,212	24,229	25,119	26,779	1,660	6.6%
○ 농외소득	17,327	16,608	17,884	19,202	19,999	797	4.2%
- 겸업소득	5,828	4,930	5,507	6,296	6,767	471	7.5%
- 사업외소득	11,499	11,679	12,376	12,906	13,232	326	2.5%
○ 이전소득	11,230	14,263	14,809	15,245	17,188	1,943	12.7%
○ 비경상소득	2,364	2,337	2,105	2,221	2,497	276	12.4%

※ 자료: 통계청, 2023년 농가경제조사 결과

또한, 경영비용 부담 가중 등으로 2023년 기준 농가의 자산은 전년 대비 감소하고 부채는 증가하는 등 농가 관련 경제지표는 악화되고 있음.

[농가 자산 및 부채 추이]

(단위: 천원)

항목	2019	2020	2021	2022	2023	증감	증감률
자산	529,455	565,622	585,676	616,467	608,043	△8,424	△1.4%
○ 고정자산	451,987	484,985	498,298	528,665	516,289	△12,376	△2.3%
○ 유동자산	77,469	80,638	87,377	87,802	91,754	3,952	4.5%
부채	35,718	37,589	36,592	35,022	41,581	6,559	18.7%
○ 농업용	14,506	14,510	13,646	12,476	15,735	3,259	26.1%
○ 가계용	11,138	12,183	11,650	11,397	11,568	171	1.5%
○ 겸업·기타용	10,074	10,896	11,297	11,149	14,278	3,129	28.1%

※ 자료: 통계청

제정안은 사료·비료·농약 등이나 농업용 유류 등의 가격이 외부 환경의 변화에 따라 급격한 변동을 보이면서 개별 농가의 노력만으로 농가 전반이 직면한 경영위기에 대응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농가의 경영부담을 완화해주려는 취지로 그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음.

또한, 제정안은 일부 지자체에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또는 ‘최저 생산비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제안된 것으로 보임.

다만, 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첫째, 농식품부의 의견과 같이 비료·농약·사료·에너지 등 투입재 보조금은 WTO 협정상⁵⁾ 생산·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감축대상 보조금⁶⁾으로

5)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WTO) 부속서 1 가 中, ‘농업에 관한 협정’

6) 감축대상 보조금(AMS): WTO 농업협정상의 국내보조 중 한 분류로 무역 및 생산왜곡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행기간 내에 일정 목표수준으로 감축하도록 되어 있는 보조금

우리나라는 연간 1조 4,900억원 한도⁷⁾ 내에서 지급이 가능한 상황임.

개정안에 따라 비료·사료·유류·전기료 등의 인상차액 지원을 법제화하여 매년 의무적으로 이에 소요되는 재정을 확보하여야 할 경우,

정부가 예상치 못한 외부 충격 발생 시 감축대상 보조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데 한계가 있어 보임.

이에 따라 정부도 WTO 협정상 규제를 받는 생산·경영비용 등에 대한 연례적인 보조방식을 취하기보다 농업직불제 등 소득 안정 지원 방식으로 농가에 대한 지원을 확대⁸⁾해 나가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둘째, 농식품부가 추계한 농자재 등 가격 인상차액 지원 시 소요예산에 따르면 제정안에 따라 향후 5년간 3조 314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한정된 농림식품 분야 재원을 감안할 때 농가경영안정과 다른 농림식품 부문 예산(양곡관리, 농업신산업육성, 농산물수급안정및유통효율화, 축산업진흥 등)에 배분되어야 하는 재원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재원 조달방안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7) WTO에는 사업 예산이 아닌 당해연도 실집행액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WTO 국내보조 분류에 따른 '16~'20년 통보 현황(국내보조 실적은 '20년까지 통보됨)을 살펴보면, 2017년에 쌀소득변동직불금 1조 4,898억원을 감축대상보조(AMS)로 통보한 바 있음.

8) 공익기능증진직불 예산은 2022년 2조 3,609만원에서 2023년 2조7,268만원, 2024년 2조 8, 7018만원으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임.

[농림축산식품부 프로그램별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부문	프로그램	23년 예산	24년 예산
[총계]		17,357,345	18,339,237
농업·농촌	[계]	16,472,628	17,445,371
[101]농업·농촌	[1000]농가경영안정	4,789,816	5,032,916
	[1100]농업인력육성및창업지원	1,155,378	1,625,914
	[2100]양곡관리	2,375,907	2,809,888
	[2200]농업신산업육성	592,163	408,737
	[3000]농산물수급안정및유통효율화	1,757,653	1,728,153
	[3700]축산업진흥	1,040,975	991,934
	[3900]가축방역및축산물안전관리	306,127	347,274
	[4000]농업생산기반정비	1,910,972	1,931,595
	[4100]농촌복지및지역활성화	1,577,256	1,493,085
	[5000]국제협력협상	127,930	200,327
	[6000]농산물품질관리	93,841	96,586
	[6200]농림축산검역검사	135,304	129,804
	[6400]종자관리	116,717	123,973
	[6500]농식품공무원교육원교육운영	4,216	4,387
	[7000]농림축산식품행정지원	488,373	520,798
식품업	[계]	884,717	893,866
[104]식품업	[2800]식품외식산업육성	884,717	893,866

※ 자료: 농식품부 정책기획관 기획재정담당관 제출자료('24.8.16)

셋째, 현재도 농식품부 등 정부는 필수농자재 및 에너지비용 지원 등을 위하여 「비료관리법」, 「축산법」 등 개별 법률에 근거를 둔 예산사업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농업용 면세유 조세감면, 농사용전력 판매 단가 인상 완화⁹⁾ 등의 정책을 수행하고 있음.

< 농업용 면세유류 제도개요 >

- ◆ 목적: 농업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농업기계용 유류 구입가격에 포함된 모든 세액에 대해 면세 적용('86.3.1.~)
- ◆ 근거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 ◆ 면제 세금(5종): 교통세·소비세·교육세·자동차세·부가세
- ◆ 면세 유종(6종): 경유, 등유, 휘발유, 중유, 윤활유, LPG
- ◆ 면세유 공급대상 농기계: 트랙터·콤바인 등 42개 기종

제정안의 입법을 위해서는 현재 수행 중인 필수농자재 및 농업에너지 비용 지원 관련 사업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및 정비가 필요해 보임.

[필수농자재 및 농업에너지비용 지원 사업]

(백만원)

세부사업(내역사업)	주요내용	법적근거	'24 예산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	무기질비료 구입비 일부(가격상승분의 80%) 지원	「비료관리법」 제7조	28,815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 (농가사료구매자금지원)	축산농가에 사료구매를 위한 자금 저리 융자 지원	「축산법」 제3조	300,000
농업자금이자보전 (특별사료구매자금)	축산농가에 사료구매를 위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31,730
농업자금이자보전 (사료구매자금)	축산농가에 사료구매를 위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		20,834
시설농가유가보조금한시지원 (시설농가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한시지원)	시설원예농가에 한시적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가 지원 추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7조	6,972

※ 자료: 농식품부 농업정책관 농업경영정책과 제출자료('24.9.13) 재구성

따라서 제정안에 대해서는 필수농자재 구입비용 의무 지원의 법제화 필요성과 감축대상 보조금의 탄력적 운용 필요성, 농림식품 분야 재원 배분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존에 발의된 5건의 제정안과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이하에서는 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조문별로 검토하고자 함.

9) 현행 전기요금체계는 「전기사업법」 제16조, 한국전력의 「기본공급약관」 및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에서 전기사용 용도에 따라 계약종별로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농사용전력은 다른 계약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음 '23년도에 산업용 등 요금은 21.1원/kWh 인상하였으나, 농사용은 3년간 분할 적용 중('23년 8.2원, '24년 6.5, '25년 6.4)임.

2. 조문별 검토

가. 목적 및 정의

제정안은 이 법의 목적을 농업경영 위기에 직면한 농업인을 위한 필수적인 농자재 및 에너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가소득의 증대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함(안 제1조).

정의 조항과 관련하여 농업인의 정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정의를 따르고, ‘필수농자재’를 농산물, 축산물 등의 생산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서 농약, 비료, 사료 및 농업용 비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자재와 농업용 유류 및 전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로 정의하고 있음(안 제2조).

제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자재 및 에너지 가격의 폭등으로 인하여 농업경영 위기에 직면한 농업인을 위한 필수적인 농자재 및 에너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가소득의 증대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필수농자재”란 농산물, 축산물 및 임산물의 생산에 없어서는 안 되는 농자재 및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농약, 비료, 사료 및 농업용 비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자재 나. 농업용 유류 및 전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수농자재 가격의 폭등에 대비하여 농업경영 안정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필수농자재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정안에 목적, 정의 조항을 두는 것은 일반적인 입법 조치로, 이 중 정의 조항은 제정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하여 법률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제정안에 따른 필수농자재의 범위를 기존 5건의 제정안과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은바, 제정안의 입법 시 필수농자재의 범위는 농산물의 생산에 필수 요소인지 여부와 실제 지원 시 재정 소요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제정안별 필수농자재 정의 규정 비교]

문대림의원안	윤준병의원안	김한규의원안	어기구의원안	이개호의원안	전종덕의원안
-	농축산물 생산에 주로 사용되는	농축산물 생산에 주로 사용되는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에 꼭 필요한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에 꼭 필요한	농산물 등의 생산에 없어서는 안 되는
비료, 사료	비료, 사료	-	비료(퇴비), 사료	비료(퇴비), 사료	비료, 사료
-	농약	-	농약	농약	농약
-	-	-	유류, 비닐,	농업용 유류, 비닐,	농업용 비닐, 농업용 유류, 농업용 전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 자재	필수농자재심 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 농자재	필수농자재심 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 영농자재	필수농자재심 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영농자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자재 또는 에너지

나. 지원대상, 지원품목 및 지원기준

제정안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농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에 대하여 필수농자재의 구입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면서, 지원기준은 △농가구입가격

지수 중 재료비, 경비 및 자산구입비의 가격지수가 전년도 대비 10% 이상 상승한 경우, △농가교역조건지수가 전년도 대비 10% 이상 상승한 경우, △필수농자재의 가격이 최근 5년간 필수농자재 평균 가격 대비 5% 이상 상승한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
제6조(필수농자재의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농지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자경하거나 같은 조 제6호에 따라 위탁경영을 통하여 타인의 농지에서 실제로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농업인에 대하여 필수농자재의 구입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은 다음 해 6월 30일까지 하여야 한다. 1. 통계청이 매년 조사·발표하는 농가구입가격지수(농업경영체의 가계 및 경영활동에 투입된 품목의 가격지수를 말한다) 중 재료비, 경비, 및 자산구입비의 가격지수가 전년도 대비 100분의 10 이상 상승한 경우 2. 통계청이 매년 조사·발표하는 농가교역조건지수[농가가 생산하여 판매하는 농산물과 농가가 구입하는 생활용품 또는 농기자재의 가격 상승폭을 비교하여 농가의 채산성(採算性)을 나타내는 지수를 말한다]가 전년도 대비 100분의 10 이상 하락한 경우 3. 필수농자재의 가격이 최근 5년간 필수농자재의 평균 가격 대비 100분의 5 이상 상승한 경우 4. 그 밖에 농자재 및 에너지 가격이 폭등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농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등 농업인단체의 대표 등과의 협의를 거쳐 필수농자재의 지원 범위 및 방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필수농자재 지원의 세부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필수농자재 지원금의 사용) 제6조에 따라 필수농자재의 구입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받은 자는 그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필수농자재 지원을 위한 예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필수농자재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세출예산에 반영하도록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제정안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품목 지원조건 및 지원기준을 기존 5건의 제정안과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음.

제정안의 입법 시 제정안의 핵심내용인 지원대상, 지원품목 지원조건 및 지원기준에 대해서는 지원 필요성, 소요예산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그 범위와 수준이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제정안별 지원대상 등 범위 비교]

구분	문대림의원안	윤준병의원안	김한규의원안	여기구의원안	이개호의원안	전종덕의원안
지원 대상	농업경영체 (농업인+농업 법인)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인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경영체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에 따른 농업인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인
	1,822,483개	2,554,935명	1,822,483개	2,554,935명	추산 불가	2,554,935명
지원 품목	◆필수농자재 -비료, 사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자재 ◆농업에너지 비용	◆필수농자재 -농약, 비료, 사 료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농업자재	◆필수농자재 -농식품부장 관이 필수농 자 재 심 의 위 심의를 거쳐 선정 ◆농업기계	◆필수농자재 -비료, 퇴비, 유 류, 비닐, 농약, 사료 -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품목	◆필수농자재 -비료, 퇴비, 유 류, 비닐, 농약, 사료 -필수농자재심의 위에서 정한 품목	◆필수농자재 -비료, 퇴비, 사 료, 농약, 농업 용 비닐유류 전기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한 는 품목
지원 조건	일정 가격 이 상 상승(일정 가격은 시행령으 로 규정)	품목별로 직 전 3개년 평 균 가격 보 다 가 격 상승	가격 급등(세부 내용은 시행령으 로 규정)	품목별로 직 전 3개년 평 균 가격 보 다 가 격 상승	가격 급등(세부 내용은 시행령으 로 규정)	농가구입가격 지수 중 재료 비등의 가격 지수가 전년 대비 10% 이 상 상승한 경 우 등
지원 기준	가격 인상분 의 전부 또는 일부 (세부내용은 시 행령으로 규정)	가격 인상액 의 100분의 70 이상 * 지자체는 재 정여건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필수농자재는 위원회 심의 로 결정, 농업 기계는 시행 령으로 규정	가격 인상액 의 100분의 50 * 지자체는 재 정여건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필수농자재심 의위원회 심 의로 결정	지원의 세부 기준은 시행 령 및 고시
재정 소요 추계 (농식 품부)	3조 1,976억원	9조 6,374억원	2조 8,751억원	6조 8,580억원	3조 755억원	3조 314억원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필수농자재 가격의 폭등에 대비하여 농업경영 안정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협력할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안 제3조),

필수농자재의 지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안 제4조)

제정안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수농자재 가격의 폭등에 대비하여 농업경영 안정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필수농자재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와 같이 제정안에서 각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필수농자재의 지원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여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명확히 함으로써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집행 및 노력을 유도하여 법률의 입법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

한편, 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제정안과 다른 법률 간 적용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다른 법률¹⁰⁾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제정안에 일반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음.

10) 다른 법률에는 「사료관리법」, 「농약관리법」, 「농업기계화촉진법」 등이 있을 것으로 보임.

라.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정안은 농식품부장관이 필수농자재의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① 필수농자재의 가격 폭등에 대한 대비 및 대응 계획, ② 필수농자재 품목의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필수농자재 지원을 위한 5년 주기의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함)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실행계획을 1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

제정안
제5조(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수농자재의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수농자재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필수농자재의 가격 폭등에 대한 대비 및 대응 계획 3. 필수농자재 품목의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필수농자재 지원에 필요한 자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필수농자재의 비용 절감을 위한 관한 사항 6. 필수농자재 지원 관련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7. 필수농자재 지원정책의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필수농자재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의 내용에 따라 연도별 필수농자재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농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 없

제정안
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시·도지사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필수농자재 지원을 위한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1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종합계획, 시행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책의 수립·집행과 관련된 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 및 실시 등에 관한 규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여야 할 기본적인 책무와 관련된 계획·시책·정책 등을 수립·시행할 의무를 법률로 명확히 함으로써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집행 및 노력을 유도하여 법률의 입법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것임.

참고로, 농식품부 소관으로 비교적 최근에 제정·시행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4.7.26.시행) 및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24.2.15. 시행) 등에서도 5년 단위 기본계획 및 1년 단위 시행계획 등의 수립 조항을 마련하고 있음.¹¹⁾

11)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과 연관 산업을 전략적·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각 호 생략>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포하여야 한다.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5조(농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고용인력의 육성과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

기존에 발의된 5건의 제정안에는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심사 시에 해당 조항의 규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각 호 생략>

② <생 략>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시·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시·도지사는 기본계획과 그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5년마다 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이하 "시·도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도계획을 수립·변경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시장·군수 및 자치구(특별시의 자치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구청장(이하 "시·군·구의 장"이라 한다)은 시·도계획과 그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5년마다 시·군 및 자치구의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이하 "시·군·구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마. 필수농자재 가격 조사 및 위반행위의 조사

제정안은 필수농자재의 사용 현황, 원가 및 판매가격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음(안 제9조).

또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필수농자재의 지원을 받거나 필수농자재의 구입을 위한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등의 발생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안 제10조).

제정안
제9조(필수농자재 가격 등의 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수농자재의 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수농자재의 사용 현황, 원가 및 판매가격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위반행위의 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수농자재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반행위의 발생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필수농자재의 지원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하는 행위 2. 제7조를 위반하여 필수농자재의 구입을 위한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농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정안에서 필수농자재의 사용 현황, 원가 및 판매가격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한 것은 필수농자재 가격의 변동상황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필수농자재 등 지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취지로 보임.

기존 4건의 제정안에서도 필수농자재의 가격 변동상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규정을 두고 부수적으로 실태조사 등을 위한 타 기관의 장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 권한, 수집된 자료·정보의 제3자 제공·누설 또는 목적외 용도 사용 금지 등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음.

[실태조사 관련 조항 비교]

구분	문대림의원안	윤준병의원안	여기구의원안	이개호의원안	전종덕의원안
실태조사 근거	필수농자재의 수급 및 가격 변동상황과 농업에너지비용에 관한 실태조사	필수농자재의 수급 및 가격 변동상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	필수농자재에 관한 실태조사	필수농자재에 관한 실태조사	필수농자재 가격 등 정기적 조사 및 공표
자료요청 등	▶ 실태조사 등을 위한 타 기관장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 권한 ▶ 수집된 자료등의 제3자 제공·누설 금지 등	▶ 실태조사 등을 위한 타 기관장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 권한 ▶ 수집된 자료등의 제3자 제공·누설 금지 등			

한편,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는 제정안에 따라 형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안 제12조)에 대한 적극적인 적발을 통해 위반행위를 억제하여 궁극적으로는 농업인 등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원금을 받아 지원 목적에 맞

게 지출하도록 함으로써 이 법의 입법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려는 취
지로 이해됨.

바. 권한의 위임·위탁 및 벌칙

제정안은 이 법에 따른 농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가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농식품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관련 기관의 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 △필수농자재의 구입을 위한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
제11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③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 2. 제7조를 위반하여 필수농자재의 구입을 위한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은 법률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것으로, 법률이 정한 권한의 분배를 대외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제정안과 같이 법률에 근거를 두는 것이 타당함.

또한, 벌칙 규정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타 입법례¹²⁾에서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하거나 지원금을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형벌을 부과하고 있는 점을 참고할 수 있음.

문 의 처
02)6788-5415

12)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자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금을 받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지원금을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